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제 1039호 | 2015년 7월 20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와 검토과제

박영원\*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1)</sup>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인구의 약 20.8%인 1,084만명이, 2040년에는 약 32.3%인 1,65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가는 것과 맞물려 공공·민간분야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민간분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다.<sup>2)</sup>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됨으로써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공직 내·외의 정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의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2015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 경영평가 등을 통한 소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sup>3)</sup>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된 금융권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4)</sup>

이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의사항,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2)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계급정년이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65세)이다.

3) 2015년 6월 임금피크제를 현재 56개 공공기관에서 316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4) 신용아, 「은행권 임금피크제 10년...“정년 못 채우고 퇴직금만 줄었다”」, 『서울신문』, 2015년 6월 29일자.

## 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의사항

공무원 정년을 논하기 앞서 공무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분류하며,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며, 경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각각 개별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60세로 연령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정년이 60세이며, 정년을 초

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를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64세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2015년 7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구는 5월말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의 후속조치로 여야 합의에 따라 ①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②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③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에서는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의견 차가 큰 공무원 정년연장안이 핵심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연장(60세→65세)과 맞물려 정년을 연장하되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재고용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sup>5)</sup>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보수현실화를 주장하며, 인건비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정년연장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협의기구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의견을 나누겠지만 공무원정년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논의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최근 인사혁신처장은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 시범실시하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최훈길, 『이면면 “2017년, 공무원 임금피크제 시범실시하겠다”』, 이데일리 뉴스, 2015년 6월 3일자.)

### 3.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공무원 정년은 국가의 인사제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최근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추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주요국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외 주요국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법적 근거

국가명	정년연령	법적근거/동향
미국	없음	-
영국	65세	「공무원관리규정(CSMC)」, 「고용평등연령법」
일본	60세	「국가공무원법」, 별도 법률로 지정하거나, 특례정년을 규정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령이 다름.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재고용제 실시
독일	65세	「고령자시간제근무법」,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조정
프랑스	62세	양육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3년 근무연장 가능. 「노동법」, 「퇴직연금법」에 따라 2012년부터 4개월씩 순차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늘려 2018년까지 67세로 조정
스웨덴	65세	「공공고용법」
캐나다	65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상 정년보장
이탈리아	65세(여성은 60세)	「국가공무원법」
대만	65세	「공무원임용법」
네덜란드	65세	「공무원법」
덴마크	67세	「국가공무원법」, 'New Goals-Government Platform' 프로

		그럼에 의해 70세로 연장 추진
핀란드	65세	1995년 연금개혁을 통해 퇴직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음
중국	60세(여성은 55세)	「국가공무원법」
싱가포르	62세	199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됨
필리핀	65세	「국가공무원법」
태국	60세	「국가공무원법」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의 연금수급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sup>6)</sup>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함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 60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sup>7)</sup>

특히, 계급정년이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60세로 되어 있는 민간분야의 정년<sup>8)</sup>, 신규 공무원의 채용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로 연장

6)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개정하였다.

7)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8)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의무화된다.

하는 방안 및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완화하는 방안, 직급별 정년을 달리하여 중·하위직급의 경우 고위직보다 정년을 좀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를 검토하고 있다.<sup>9)</sup>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없으나, 이미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의 확대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지방공기업까지 확대<sup>10)</sup>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예산절감,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정서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재고용제는 법적인 정년을 보장하고, 현재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정년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사정책에 불과하며 대상 공무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제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혼합모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복잡하여 적용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나 재고용제의 논의는 재정절감의 규모, 공무원의 사기, 공무원 인사구조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나가며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조직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기진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또는 재고용제 등의 도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그리 크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증가한다라는 비판적 견해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고용제의 경우 조직문화상 야기될 갈등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업무능력 등 재고용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합리적인 공무원 정년연장안을 도출하여 공무원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9)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이 되면 보수를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재고용제는 정년퇴직 후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고용제도로 재고용기간의 보수, 근로시간,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0) 라동철, 『지방공기업도 내년부처 임금피크제 도입』, 국민일보, 2015년 7월 15일자.